

# 2026년 하반기 검역해소품목 지원사업 공고(오프라인)

## 1. 사업목적

- 검역해소품목 해외 판촉(시식, 시음 등) 지원을 통한 수출·입점 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 2. 지원대상

- 한국식품 취급 수입바이어, 유통업체
- 행사기간 : 2026. 7. 1. ~ 2026. 10. 31. / 4개월간

## 3. 지원품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삼(*24, 타겔)</li> <li>• 감귤류·후지사과·감·밤·포도·파프리카·토마토·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25)</li> </ul>
----	---

## 4. 지원사항

- 지원항목 : 해외유통채널 판촉마케팅 관련 비용 지원 (임차, 장치, 홍보 및 시식 행사비 등)
  - (1) 임차·장치·입점 : 행사장 구성 및 이벤트와 관련된 임차 및 설치비용
  - (2) 홍보 : 판촉행사 관련 이벤트 용역, 미디어매체 광고, 현수막, 전단지, 인터넷 배너 제작, SNS홍보, 온라인 시식체험, 증정품·경품행사, 포인트·쿠폰행사, 식품중개인 기획·입점 관련 비용 등
    - \* 증정품·경품·포인트·쿠폰 등은 합산하여 배정예산의 25% 한도
  - (3) 시식행사 : 판촉 요원 고용비, 시식 식품비(배정예산의 10% 한도) 등
- 지원한도 : 최대 50백만원 한도
- 지원비율 : 지원한도(배정예산) 이내 실제 집행비용의 80% (단, 대기업\* 제품 단독 판촉 50%)
  - \* 대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C, 롯데 신세계 허림 KGC 동원 하이트진로 삼양 농심 등)
- 사업의무액(목표수입액) : 바이어(유통업체) 신청 예산의 최소 1배 이상
  - \* 단, 목표수입액은 판촉 행사 기간 전 60일 및 행사 기간 내에 수입한 금액에 한하여 인정
  - \* 수입바이어(유통업체)가 제시하는 목표수입액을 사업자 선정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 해당 목표수입액을 사업의무액으로 같음하여 실제 달성한 수입실적 비율에 따라 최종 사업비 정산 예정
  - \* aT 선정위원회를 거쳐 행사 규모 등에 따라 업체별 지원 한도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이 줄어든 비율만큼 목표수입액도 감액됨
  - \* 수요조사 시 제출한 행사매장이 당초 계획과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사전에 aT에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지원 규모 축소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5. 신청안내

- 신청방법 : 뉴욕 aT 권역 업체분들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이메일로 신청**
- \* 접수 후 유선 확인 필수

미국(동부·중부)	뉴욕지사	newyork@at.or.kr 1-212-889-2561
-----------	------	------------------------------------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양식 첨부)
- 접수기한 : 2026. 6. 24.(수)

# 참고 1 정산 / 지원기준

## 1. 공통기준

- 모든 사업비용은 해당 행사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한하며, 자산성 항목(유형·무형) 불인정
-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사본을 제출시는 원본 대조필 날인
  - \* 각국 세무당국이 인정하는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제출이 원칙이며, 사후 변동 가능 증빙은 입금증이나 송금확인서(정산) 등 확정 증빙 첨부
- 모든 증빙 및 제출서류는 국문 번역표기 후 제출, 본사는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요구 가능
- 국내 집행금액의 부가가치세는 정산대상에서 제외 \* 사유 : 부가가치세 환급
- 현지 화폐 집행비용은 KEB 하나은행 행사기간(또는 계약기간) 평균 '최초고시 송금 보낼 때' 적용
- 환율 증빙(송금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환율 적용 (국내 수출기업)
  - 반드시 수입·유통업체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불가피한 경우 본사와 사전협의)
- 명시되지 않은 정산기준은 관련 세부 사업 지침을 준용하여 적용

## 2. 소비기반 조성 홍보

### □ 선급금 신청

- 선급금은 지사 배정예산의 70%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용역사 대상 선급금 지급 없이 수시 중간 정산 원칙
  - \* 불가피한 경우, 국가별 자문 거친 후 본사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지급

### □ 대행용역 계약 및 관리

- 세부추진계획 내 대행용역 추진 여부 및 계획 필수 포함
  - \* 1억원 초과하는 계약 추진 시 일상 감사 대상
- 대행용역 계약서, 세부산출내역서, 결과보고서(해외지사 및 대행용역사), 검인수조서 등 계약 관련 서류 필수 제출
  - 계약서, 세부산출내역서 등 증빙자료의 **주요사항은 번역**하여 첨부
  - \* 일부 과업에 대하여 계약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승인요청서 하도급 계약서,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총액계약 시 세부산출내역을 정산항목 기반으로 작성·산출하고, 검인수 시 산출내역 기반으로 사업이행 확인을 위한 수준의 증빙 필요
  - 계약만료 전까지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시 계약변경, 비목 간 조정 시 세부산출내역의 수정 필수
  - 총액계약이라 할지라도 **수량 중심 사업이행 확인**을 위한 증빙제출 의무 고지 및 실비정산 항목 및 정산 절차에 대해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
  - **사후원가정산/실비정산 항목은 이행내역과 지출증빙 확인 필요**
- 수수료 한도는 계약금액의 10%, 일반관리비의 경우 8% 초과 불가

### □ 증빙 제출 관련

- 본사 제공 정산요청 양식에 따라 정산요청 내역 송부(양식3)
- 정산증빙 체크리스트 참고하여 증빙 점검(양식4)

지원항목	세부내역	제출서류
임차비 (지사집행)	○ 행사장(야외공원, 광장, 소핑몰, 컨벤션 등)	○ 해외지사 지출결의서 ○ <b>[결과보고]</b> 행사장소 개요, 사진 등
대행 용역비 (총액계약)	○ 이윤율(대행수수료) 10% 한도 및 일반관리비 8% 한도 *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 대행사 결과보고서 ○ 해외지사 지출결의서 ○ 해외지사 검인수조서 - 세부산출내역 이행점검표(양식1) ○ 계약서, 송금증 등 관련 지출 증빙
변동가능 항목 (실비정산 or 사후원가정산)	○ 단가 변동성이 높고, 예측 불가능한 항목 - 항공료, 숙박비, 인플루언서 섭외비 등 * 인플루언서 섭외비의 경우 단가 및 수량을 확정하여 총액계약 항목으로도 책정 가능	○ 해외지사 지출결의서 ○ <b>[결과보고]</b> 사후 원가정산 / 실비정산 증빙자료
장치비	○ 디자인 : 행사장 및 장치 디자인 ○ 임대비 : 음향, 조명, 전기설비 등 장비 ○ 시공비 : 행사장 구성, 장치물 제작·설치	○ 해외지사 지출결의서 ○ <b>[결과보고]</b> 이행결과 및 사진 - 부스, 장치물 등 개수, 크기/면적, 형태 등 기본사항 명시
인건비	○ <b>정직원</b> : 행사 사전 준비 및 현장 운영 * 대행사 소속 또는 계약 직원 ○ <b>보조인력</b> : 운영 및 통역요원, 단순 조리사 등 * 인건비 산정시 단가표 참고 자체 산출	○ 해외지사 지출결의서 ○ <b>[결과보고]</b> 인력 투입내역
행사운영	○ <b>행사 프로그램 섭외비</b> - (B2B) MC, 동시통역, 컨설팅, 강사 등 - (B2C) 가수, 공연단, 전문 셰프 등 * 금액이 큰 항목이므로 비용 증빙 제출(이행 확인)	○ 해외지사 지출결의서 ○ 계약서, 송금증 등 관련 지출 증빙 ○ <b>[결과보고]</b> 프로필, 투입내역 및 결과 - 이력, 시간, 내용, 사진 등

지원항목	세부내역	제출서류
	○ <b>식재료비</b> - 쿠키쇼, 시식·시음, 전시용 식재료 구입비 ○ <b>비품 및 소모품비</b> - 물품 대여 및 구입 비용 * 자산성 항목 구입 불인정	○ <b>[결과보고]</b> 이행결과 및 사진 - 시식, 전시물품 리스트
홍보비	○ <b>홍보물 기획, 디자인 및 제작</b> - 기념품, 인쇄물, 홍보물, 명찰, 소핑백 등 - 행사 현장 사진 촬영, 영상 제작 등 ○ <b>온·오프라인 미디어 홍보</b> - TV, 신문, 옥외광고, SNS 등 미디어 홍보비	○ <b>[결과보고]</b> 제작내역 - 구매·제작물, 수량, 활용 내역 등 ○ 결과물(사진·영상 등) * 필요시 발송 가능 ○ <b>[결과보고]</b> 홍보 결과 - 매체, 홍보 기간, 방법, 홍보 효과 ○ 결과물(사진·영상 등) * 필요시 발송 가능
운영관리비 (지사집행) 배정예산 10% 이내	○ <b>출장비(여비)</b> : 공사 「여비규정」 준용 ○ <b>업무협의비</b> * 내부 직원만 참석 또는 온라인 진행 시 불인정 ○ <b>사무/행사 보조인력(직접고용시)</b> - 행사 추진을 위한 인력 고용 * 인건비 산정시 단가표 참고 자체 산출 ○ <b>기타</b> : 송금수수료, 소모품 구입 등 * 대행용역 하위항목별 정산기준 및 증빙 준용 및 추가로 지출 관련 증빙 제출	○ 해외지사 지출결의서 - 출장명령부 첨부 ○ 해외지사 지출결의서 ○ 업무회의록 : 참석자, 협의내용, 사진 등 ○ 해외지사 지출결의서 ○ 투입인력 점검표(보조인력)(양식2) - 이름, 역할, 근무일시, 지급 금액 (초과수당 표시) 포함 ○ 해외지사 지출결의서

\* 소요예산 작성 시 위 항목 구분 기반으로 작성, 이외 기타 항목 추가 가능

\*\* 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타 수출지원사업 정산기준 준용

\*\*\* 해외지사에서 검인수를 완료한 대행용역의 세부 정산내역, 지사장의 결재를 득한 지출결의서의 세부 정산내역에 대한 책임은 해외지사에 있음

## 2026년 검역해소품목 소비자 체험 홍보 정산 양식

### <총 집행 및 정산액>

예산	사업비 총 집행금액(A)	선금금(B)	잔여 송금 필요액(A-B)	비고
100백만원	405.00(화폐단위 기입)		405(화폐단위 기입)	

### <목록>

(단위: 현지화폐)

지출결의서 번호	지출결의서 적요	지출금액	구분	페이지
20251200-001-0001	○○○○	100.00	임차비	1
20251200-001-0002	○○○○	200.00	대행용역비	5
20251200-001-0003	○○○○	50.00	바이어 초청비	7
20251200-001-0004	○○○○	10.00	행사 시식용품 구입	9
20251200-001-0005	○○○○	10.00	행사관련 비품 구입	11
20251200-001-0006	○○○○	-	보조인력(직접고용)	13
20251200-001-0007	○○○○	20.00	출장비	15
20251200-001-0008	○○○○	10.00	업무협약비	18
		5.00	송금수수료	21
			...	
합 계		405.00		

- 위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지사의 필요에 따라 수정 가능
- 작성 후 **한글파일(결과보고서 내 삽입 가능) 혹은 엑셀파일로 발송 요망 (PDF 지양)**

[양식 4]

## 2026년 검역해소품목 지원사업 정산증빙 체크리스트

항 목	O / X / 해당없음
○ <b>대행용역 체결여부</b>	
<b>(대행용역 사용시)</b>	
- 계약서	
- 세부산출내역서	
- 세부산출내역 이행점검표	
- 검인수조서	
- 대행사결과보고서 내 항목별 이행사항(사진, 결과 등)	
- 지사결과보고서 내 항목별 이행사항(사진, 결과 등)	
- 지출결의서	
<b>(대행용역 미사용 항목)</b>	
- 계약서	
- 결과보고서 혹은 사진 등의 확인 가능 자료	
- 영수증 혹은 인보이스	
- (전문인력) 프로필	
- (보조인력) 투입인력점검표, 금액, 영수증 등	
- 지출결의서	
○ <b>운영관리비</b>	
- 평가 관련 비용(위원수당영수증, 이체증 등)	
- 출장비 증빙(명령부, 결과보고서, 영수증 등)	
- 업무협약비 증빙(업무협약록, 영수증 등)	
- 물품구입 증빙(영수증, 인보이스, 이체증 등)	
- 지출결의서	

### 3. 온·오프라인 판촉마케팅

지원항목	세부내역	제출서류								
임차 관련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촉행사장 임차비 및 입점수수료</li> <li>- 품목등록비, 점포 Listing Fee 이외 단순 매출 수수료는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업체(매장) 발행 증빙서 또는 임차계약서(금액표시)</li> <li>- 임차기간, 규모, 금액, 지급방식 등 명시</li> <li>○ 인보이스, 송금증 등 지출 증빙</li> </ul>								
장치 관련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촉 관련 시식대, 행사장 구성 및 이벤트와 관련된 장치 제작 설치비 및 임차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보이스, 송금증 등 지출 증빙</li> <li>- 사양, 수량, 임대일수 등 명시</li> </ul>								
홍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홍보물 기획, 디자인 및 제작</b></li> <li>- 행사 관련 이벤트 용역, 미디어 매체 제작 및 광고, 현수막, 전단지, 인터넷 배너, SNS, 온라인 시식 등 판촉 관련 행사 및 제품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보이스, 송금증 등 지출 증빙</li> <li>○ <b>[결과보고]</b> 홍보물·매체광고 내역 및 홍보 현황 사진</li> <li>- 구매·제작물, 수량, 활용 내역 등</li> <li>○ (온라인) 캡처화면 및 홍보주소(URL) 명시</li> <li>○ (이벤트) 이벤트 용역 활용 시 <b>용역계약서</b> 첨부</li> <li>- 계약·행사기간, 활동내역, 금액, 지급방식 등 세부 내역 명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증정품·경품·포인트·쿠폰·배송료 등</b></li> <li>- 전체 배정 예산의 25% 한도 내 지원</li> <li>- 증정품 및 경품(20%), 포인트+쿠폰(합산)(10%), 배송료(10%), 증정품+샘플(합산)(5%)</li> <li>* 증정품·경품은 한국 농식품(꾸러미) 권장</li> <li>* 증정품은 행사 품목 샘플 지급 혹은 1+1 행사 등으로 진행하고 행사 품목과 관련 있는 증정품(식품, 공산품 등)에 한해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보이스, 송금증 등 지출 증빙</li> <li>○ 증정품 관리대장(수량명시), 사진 첨부</li> <li>* 경품행사 진행 시, 사전에 행사계획 제출 및 협의 필요</li> <li>○ <b>포인트, 쿠폰 등 마케팅내역 및 관련 증빙</b></li> </ul>								
시식행사 관련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관련 홍보·판촉요원 고용(통역포함)</li> <li>○ 국가별 지원한도(1일/1인) 내 지원</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일 본 : JPY25,000</td> <td>- 중화권 : USD150</td> </tr> <tr> <td>- 동남아 : USD150</td> <td>- 미 주 : USD250</td> </tr> <tr> <td>- 유 럽 : EUR250</td> <td>- 오세아니아 : USD250</td> </tr> <tr> <td>- 기 타 : USD200</td> <td></td> </tr> </table>	- 일 본 : JPY25,000	- 중화권 : USD150	- 동남아 : USD150	- 미 주 : USD250	- 유 럽 : EUR250	- 오세아니아 : USD250	- 기 타 : USD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업체) 업체 발행 증빙 서류</li> <li>- 판촉요원 이름, 근무매장·일수, 지급액 등 명시</li> <li>* 고용업체 활용 시 신분증, 개인별 활동사진 생략 가능</li> <li>○ (직접고용) 주관사 직접 고용 시, 판촉요원 개인별 대금수령증</li> <li>- 판촉요원 이름, 근무매장·일수, 지급액 명시하여 판촉요원 서명날인</li> <li>- 신분증 사본 또는 판촉요원 개인별 활동</li> <li>○ <b>[결과보고]</b> 시식행사 사진</li> </ul>
	- 일 본 : JPY25,000	- 중화권 : USD150								
- 동남아 : USD150	- 미 주 : USD250									
- 유 럽 : EUR250	- 오세아니아 : USD250									
- 기 타 : USD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로 신분증,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 징구 애로 시 해당 국가의 제출 가능한 증빙으로 대체가능</li> </ul>										

지원항목	세부내역	제출서류
시식행사 관련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시식용 식품 및 시식관련 비품</b></li> <li>- 시식용 식품은 전체 배정예산 예산의 최대 20% 한도 지출</li> <li>- 시식 관련 비품 구매는 소모품 구매 원칙이며, 자산성 비품의 구입은 불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식용 식품 증빙은 행사기간 동안 유통매장에서 직접 구입한 영수증 또는 납품증명서(유통매장 확인필) 제출</li> <li>*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li> <li>○ 행사매장 시식행사 사진 첨부</li> </ul>
상품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포장·용기 디자인 개선 비용</b></li> <li>- 선정 이후 개발·개선된 디자인 건에 한함</li> <li>- 수출국 라벨링 규정에 따른 현지 라벨링 개선 포함 필수(스티커 형식의 라벨링 개선 불인정)</li> <li>- 국문 결과물 정산 불인정</li> <li>* 품목 특성상 현지 모조품과의 구별이 필요한 경우(인삼류 등) 국문 결과물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업체와의 계약서(세부산출내역서 포함)</li> <li>○ 전후 결과물 사진 제출</li> <li>○ 인보이스, 송금증 등 지출 증빙</li> <li>-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 송금증 포함</li> <li>○ 필요시 모조품 구별 관련 증빙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규격에서 특화규격으로 변경을 위한 패키지(제작업) 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 업체와의 계약서, 송금증, 제작업 결과(전후 사진, 규격 정보)</li> </ul>
거래 알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어 및 수출기업 리스트를 보유한 전문 플랫폼이 제공하는 매칭 서비스 비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플랫폼 내 상품 상세 페이지, 견적서, 영수증 등 서비스 구매 증빙 서류 등</li> <li>* 서비스 구매하여 매칭된 대상과 판촉 시 정산</li> </ul>
현지 저운송비 (해외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항부터 소비지까지 내륙지역 냉동·냉장 유통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고 내역서</li> <li>○ 화물운송장(물품내역 포함), 운송업체 청구서(인보이스), 송금증 등 지출증빙</li> </ul>
운영관리비 (지사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촉건별 배정예산 10% 이내에서 운영비 지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지사 지출 결의서</li> <li>- 업무협약 : 참석자, 협의내용, 사진 등</li> </ul>

\* 지원항목 세부기준은 판촉행사 현지 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본사 협의가 필요함

\* 영수증의 수신자가 지원업체와 상이한 경우 어떤 관계인지 결과보고서에 명시

\* 항목별 지원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본사와 협의 필요

\* 한도가 있는 항목의 경우, 지원비율 적용 후 항목 한도 내 지원

○ 사업의무액 및 환율 관련 증빙

제출서류	내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의무액은 국고 지원금액의 1배</li> <li>○ 수입증빙서는 수입자(구매자)와 주관사명이 일치하여야함</li> </ul>
수출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증빙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지원액의 1배 이상의 수입신고서(CIF 기준)</li> <li>- 유통매장이 직접 수입하지 않아 수입 증빙 제출이 어려운 경우 행사기간 매출실적을 수입실적으로 활용</li> <li>- 상품명, 개수, 단가, 총매출액 등이 포함된 매출실적 증빙 제출</li> <li>- 공식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되, 인보이스 제출시는 B/L첨부(불가피한 경우 사유서, 수출신고필증 제출)</li> <li>○ 벤더일 경우 수입상과 거래관계 증빙(계약서 등) 및 수입상으로부터의 구매영수증 동시 제출 시 인정</li> <li>○ 지원대상이 국내 수출업체인 경우, 국고지원액의 1배 수출액(FOB 기준)</li> <li>- 사업의무액 증빙은 수출신고필증 제출(구매자에 바이어 명시 필수)</li> <li>○ (온라인 판촉) 온라인몰 및 O2O 매장 발행 매출액 (행사기간 한정) 필수제출</li> <li>- 상품명, 개수, 단가, 총매출액 등이 포함된 매출실적 증빙서류</li> <li>* 현지 온라인몰 정책 등으로 인해 온라인몰 발행 증빙이 불가할 경우 본사 사전협의 필요</li> </ul>
환율적용	<p>(공통)</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환율 : 해외판촉 행사기간 동안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전신환승금 (보내실 때) 평균 환율 적용, 단 비고시환율 국가는 현지 중앙은행의 원화 환산 환율 평균환율 적용                 </div> <p>(국내 수출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율증빙(송금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환율 적용</li> <li>- 외환계좌를 통한 입금으로 송금증 상 환율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송금일 기준 하나은행 '최초고시 송금 보낼 때' 환율 적용</li> <li>- 환율증빙이 없는 경우, 행사기간 평균 하나은행 '최초고시 송금 보낼 때' 환율 적용</li> </ul>

○ 수출입실적 인정기간

수출입실적 인정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실적 : 행사기간 전 60일 + 행사기간</li> <li>○ 수출실적 : 국가별 운송기간 + 행사기간 전 60일 + 행사기간</li> </ul>				
	국 가 별	일본	중화권/동남아	미주	유럽 및 기타
	운송기간	7일	15일	30일	40일

\* 행사국가, 매장, 품목은 변경 불가 원칙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요청 문서 aT(본사)로 제출 후 승인 절차 필요

\* 연내 수출입신고 완료해야함(실적 인정기간 : ~2026.12.31.)

## 참고 2 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 대기업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 92개사('25.5.1 기준)

\*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목록 변경 시, 해당 변경 목록을 적용 (표 내 식품 관련 기업 음영 처리)

구분	기업 집단명	
공시 대상 기업 집단 (92)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46)	삼성,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엘지,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농협, 지에스, 신세계, 한진, 케이티, 씨제이, 엘에스, 카카오, 에이치엠엠, 두산, DL, 중흥건설, 셀트리온, 네이버, 에쓰-오일, 미래에셋, 쿠팡, 현대백화점, 한국엔컴퍼니그룹, 부영, 영풍, 하림, 효성, 장금상선, SM, 에어치디씨, 호반건설, 두나무, 케이티앤지, 코오롱, 케이씨씨, DB, 넥슨, 오씨아이, 엘엑스, 세아, 넷마블, 이랜드
	비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46)	교보생명보험, 한국지엠, 다우키움, 금호석유화학, 대방건설, 태영, 삼천리, KG, 에코프로, HL, 동원, 아모레퍼시픽, 태광, 크래프톤, 글로벌세아, 한국항공우주산업, 엔디엠, 소노인 터너셔널, 애경, 동국제강, BS(舊 보성), 삼양, 엘이이지, 중앙, 유진, 고려에이치씨, BGF, 대광, 반도홀딩스, 대신, 오케이금융그룹, 하이트진로, 농심, DN, 현대해상화재보험, 신영, 파라디스, 아이에스지주, 하이브, 한솔, 삼표, 사조, 원익, 빗썸, 유코카캐리어스, 영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제품 단독 취급 시 50% 지원

\* 단,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에 따라 농업계열사 대기업 미적용  
 - (참고-제7항) 중앙회 계열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경우 중앙회 계열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